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8급 6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28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친수”를 “직접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훈기록부”를 “훈장·포장기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훈 대상자”를 “훈장·포장 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5항제7호 및 제8호 중 “폐치·분합·명칭변경”을 각각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역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운영 등 민관협력 지원

제11조제20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마을기업 박람회 등 마을기업”을 “마을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제22호로 한다.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21.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구축 및 운영

제14조제3항제10호 중 “(疏散)전(충무)”를 “(疏散: 분산시킴)전(충무)”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분류·수발·심사”를 “분류·접수·발송·심사”

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분류·수발·심사·관리”를 “분류·접수·발송·심사·관리”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9호 중 “(脫酸)·소독”을 “(脫酸: 산성 제거)·소독”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 중 “수발·통제”를 “접수·발송·통제”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를 “중”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재난관리실 기후재난대응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2월 28일까지
4) 지방자치분권실 지구촌새마을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5) 재난관리실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6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6) 재난협력실 감염병재난대응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

2조 중 "2021년 9월 30일"을 "2023년 9월 17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2의 정원 6명(행정서기 6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임업서기보 1명), 별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정관) ① ~ ③ (생략)	제5조(의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 <u>친수</u> 및 국무총리 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3. ---- <u>직접 수여</u> -----
4. <u>서훈기록부</u>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u>훈장·포장기록부</u> -----
5. <u>서훈 대상자</u>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5. <u>훈장·포장 대상자</u>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⑭ (생략)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의 <u>폐치·분합·명칭변경</u>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 <u>폐지·설치·분합·통합·명칭변경</u> ----
8. 읍·면·동의 <u>폐치·분합·명칭변경</u>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 <u>폐지·설치·분합·통합·명칭변경</u> -----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⑬・⑭ (생략)	⑬・⑭ (현행과 같음)	및 대학·교육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⑮ 삭제		24. <u>지역사회혁신 민관협의회</u> <u>운영 등 민관협력 지원</u>	<삭제>
⑯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5. (생략)	22. (현행 제25호와 같음)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㉑ ~ (생략)	㉑ ~ (현행과 같음)
<신설>	12. <u>지역사회혁신 민관협의회</u> <u>운영 등 민관협력 지원</u>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⑳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③ ----- -----.
8. <u>마을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u>	8. <u>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u> <u>지원사업 추진</u>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9. <u>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u>	<삭제>	10. 소산(疏散)전(충무 3중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0. ---(<u>疏散: 분산시킴</u>)전(충무 ----- -----
10. ~ 15. 삭제	10. ~ 15. 삭제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6. ~ 19. (생략)	16. ~ 19.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20. <u>마을기업 박람회 등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u>	20. <u>마을기업</u> ----- -----	제22조(기획부) ①・② (생략)	제22조(기획부) ①・② (현행과 같음)
21. <u>지역사회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및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u>	21. <u>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u> <u>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구축 및 운영</u>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22. <u>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삭제>	1. 보안·관인관리 및 문서의 <u>분류·수발·심사</u> 및 관리	1. ----- <u>분류·접수·발송·심사</u> --- -----
23. <u>지역사회혁신 관련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u>	<삭제>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21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시설주사보 1명, 방송통신서기 1명)은 <u>2021년 12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6명(행정서기 6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임업서기보 1명),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 및 별	<u>23년 9월 17일</u>-----. ②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20 <u>23년 12월 31일</u>-----.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 제>
--	---

<u>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

(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0</u>	<u>749</u>	-1
일반직 계	<u>750</u>	<u>749</u>	-1
·	·	·	
·	·	·	
행정주사	<u>18</u>	<u>17</u>	-1
·	·	·	
·	·	·	